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0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월 21일(목)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0. 21.(목)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과장	한상덕 과장(044-203-5860) 이원희 과장(044-203-5870) 김기호 과장(044-203-5880)	담 당 자	김준철 사무관(044-203-5865) 나강운 사무관(044-203-5875) 남의호 사무관(044-203-5886) 이정효 사무관(044-203-5882)

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

- 「중국 ·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개시 -

-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10. 21.(목) 제4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및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이는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9.28)함에 따른 것임

○ 조사대상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임

-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디엠티솔루션 주식회사 등(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 보호필름을 휴대폰 액정 화면상에 기포 없이 부착하기 위한 장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가압롤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해외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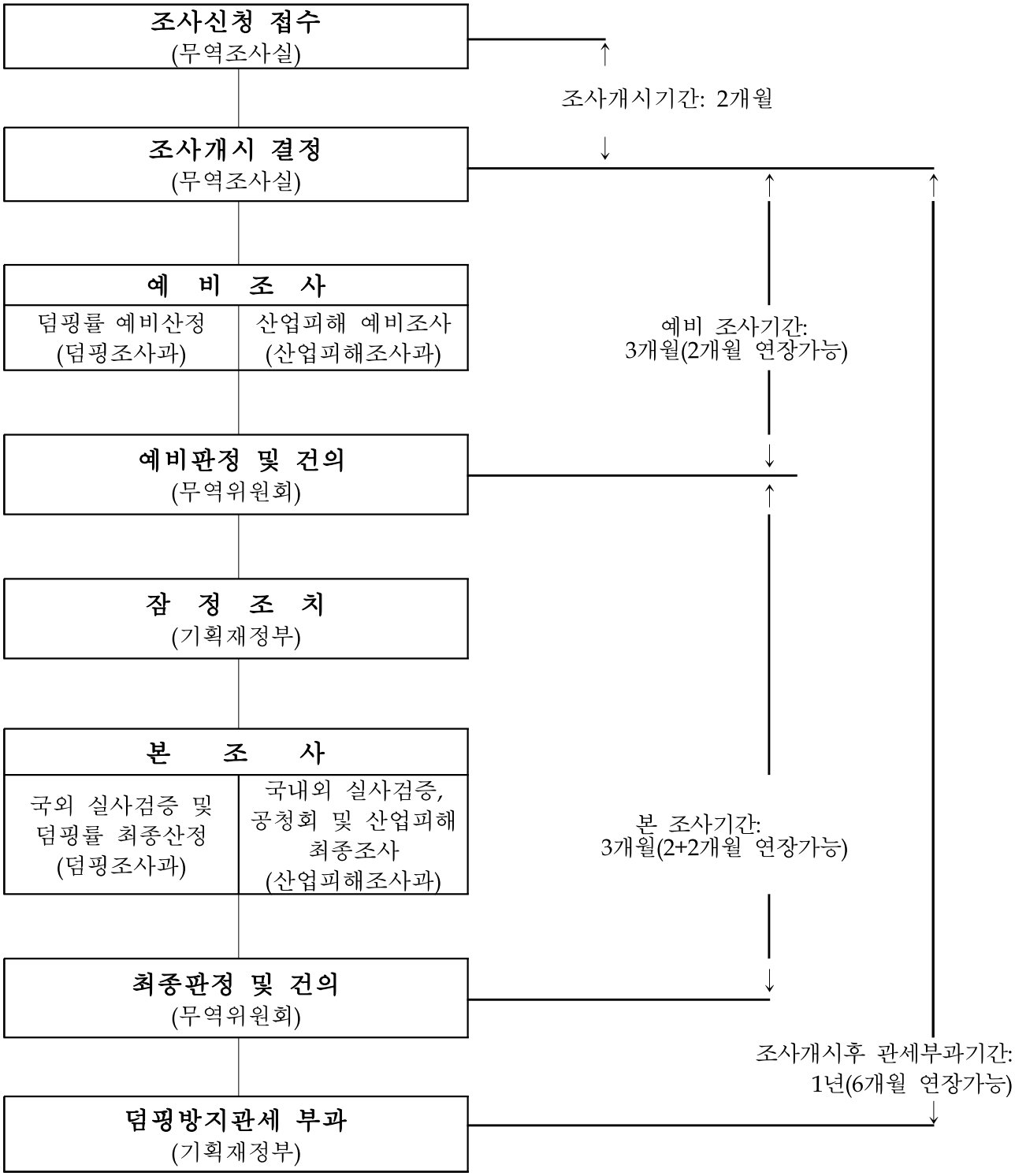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김준철 사무관(044-203-5865), 덤핑조사과 나강운 사무관(044-203-5875), 불공정무역조사과 남의호 사무관(044-203-5886), 이정효 사무관(044-203-5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참고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조사신청 (신청인 ⇨ 무역조사실)
-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잠정조치[1)]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조사실
-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판정

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이의신청 심의·결정 무역위원회
-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